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선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행령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핑방지 활동에 필요한 선수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 요청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도핑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방침의 제정·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도 시행 시 도핑방지 업무가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정보(성명, 연락처 등)와 수사·조사기관의 도핑 관련 수사·조사 기록으로 명확히 규정(제1항)
- 2) 정보 요청 시 도핑방지 활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제2항)

- 3)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개인 정보 보호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세부 기준 마련(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2. 04. ~ 03. 16.) 예정

3) 행정규제 : 심사 예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 활동 업무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 선수의 인적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또는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소속, 등 선수를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도핑 위반 관련 정보: 선수의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유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찰,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포츠윤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정보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 등에 정보요청을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핑방지활동의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

다.

-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한국도핑방지규정에 기하여 선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3 제1항에서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 활동 업무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 선수의 인적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또는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소속 등 선수를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수의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유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찰,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포츠윤리센터가 보유하고

<신 설>

<신 설>

<신 설>

있는 자료·정보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등에 정보요청을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핑방지활동의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선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44) 203 - 3175